

## 신탁계약 주요 변경사항

효력발생일 : 2019년 01월 02일

▶ 투자신탁명: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주요변경내용:

- 법령 반영 (운용 및 투자 제한 등)
- 기재 수정 등

▶ 변경대비표: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3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법령 반영	① 6. 라. 위 본문 (i)과 관련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	① 6. 라. 위 본문 (i)과 관련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b>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b> )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3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기재 수정	① 6. 마. 위 본문 (ii)와 관련하여, <u>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u>	<b>(삭제)</b>
부칙	신탁계약 변경 체결	-	<b>(추가)</b> <b>부칙 (2018.12.00)</b>  *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종류 CP-e 신설
- 기재사항 수정 등

▶ 변경대비표: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종류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기재생략)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기재생략)  <b>(추가)</b>  <b>종류 CP-e 수익증권</b>
제20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종류 신설	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기재생략)  -	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기재생략)  <b>(추가)</b>  <b>종류 CP-e 수익증권:</b> <b>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b> <b>규정한 적립금으로 투자하는</b> <b>경우로서 판매회사의</b> <b>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b> <b>투자하는 투자자</b>
제40조 (투자신탁보 수)	종류 신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은 신탁재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은 신탁재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p>따라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수율이 감소할 수 있다.</p> <p>(기재생략)</p> <p>-</p>	<p>따라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수율이 감소할 수 있다.</p> <p>(기재생략)</p> <p><b>(추가)</b></p> <p><b>종류 CP-e 수익증권</b> <b>판매회사보수율: 연 0.25%</b></p> <p>※ _____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신탁업자보수율,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기타 종류(클래스) _____ 수익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율과 동일</p>
부칙	신탁계약 변경 체결	-	<p><b>(추가)</b></p> <p><b>부칙 (2018.12.00)</b></p> <p>*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종류 A-e 신설
- 기재사항 수정 등

▶ 변경대비표: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종류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기재생략)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기재생략)  <b>(추가)</b>  <b>종류 A-e 수익증권</b>
제20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종류 신설	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기재생략)  -	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기재생략)  <b>(추가)</b>  <b>종류 A-e 수익증권:</b> <b>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b> <b>통해 투자하는 투자자</b>
제20조의2 (판매수수료)	종류 신설	① 판매회사는 종류 A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에서 납입금액·판매회사·납입회수·납입기간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① 판매회사는 종류 A 수익증권 <b>및 종류 A-e 수익증권</b> 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에서 납입금액·판매회사·납입회수·납입기간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0.70% 이하  ③ 종류 A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선취판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b>1.종류 A 수익증권:</b> 납입금액의 0.70% 이하 <b>2.종류 A-e 수익증권:</b> <b>납입금액의 0.35% 이하</b>  ③ 종류 A 수익증권 <b>및 종류 A-e 수익증권</b>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선취판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제40조 (투자신탁보수)	종류 신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은 신탁재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수율이 감소할 수 있다.  (기재생략)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은 신탁재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수율이 감소할 수 있다.  (기재생략)  <b>(추가)</b>  <b>종류 A-e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연 0.325%</b>  ※ <u>집합투자업자보수율, 신탁업자보수율,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기타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율과 동일</u>
부칙	신탁계약 체결 변경	-	<b>(추가)</b> <b>부 칙 (2018.12.00)</b>  *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